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9호

구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8일
서울특별시

1. 사업추진계획 승인

가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: 구의시장정비구역

나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

구역명칭	위 치	면 적	비 고
구의시장정비구역	광진구 구의동 66-25번지 일원	3,232.23㎡	-

다. 시장정비사업 시행자

1) 성 명 : 구의시장 주식회사(시장정비사업법인) 대표자 박종환

2) 주 소 :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31-5(구의동)

라.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: 승인 고시일

마.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규	-	광진구 구의동 66-25번지	-	증)3,232.23	3,232.23	-

※ 결정사유 : 대상지는 전통시장으로서 건축한계선 지정 등 체계적·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함

2)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구분	면 적(㎡)		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	3,232.23	-	3,232.23	-

3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◦ 도로

구분	규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3	1	12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70 (105)	구의동 66-57	구의동 66-91	-	서고 제2010-381호 (2010.10.28.)	구역 내 편입도로 기부채납

※ ()는 구역 내 연장임

◦ 시장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시장	전통 시장	광진구 구의동 66-25번지	2,484	감)2,484	-	서고 제114호 (72.8.2)	-

※ 폐지사유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하여 노후한 도시환경 저해시설 정비의 한계성 및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장 폐지

4)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3,232.23	100.0	-
판매시설 및 공동주택	2,805.03	86.8	-
도 로	427.20	13.2	-

5) 건축물의 주용도·용적률·건폐율·높이·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

주용도	건폐율	용적률	연면적	높이/층수
판매시설 및 공동주택	68%이하	370%이하	16,778.68㎡이하 (매장면적 : 3,318.5㎡ 포함)	-전통시장 : 47m/13층 이하 - 인접지역 : 27m/7층 이하

6)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

구분	계획 내용
배치	- 인근 지역과의 지역적 조화를 피하기 위해 주변에 전면공지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건물배치
형태	-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
색채	-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고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
건축선	- 서측 및 남측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4m 지정 - 동측 및 북측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~3m 지정

7)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

구 분	동 수	전용면적	임대주택 건립세대수	비 고
신규	1동	20㎡형	5세대	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

※ 상기 계획은 예시(안)이며, 각종 심의 및 협의,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바. 입점상인보호대책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
- 관계서류 참조

2.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

- 구의시장은 1971년 준공된 시장으로 건축물 노후화 및 유통환경 변화 등 이용객 및 매출 감소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위상 회복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현대화 시장으로 재도약하고자 함

3. 관계서류 열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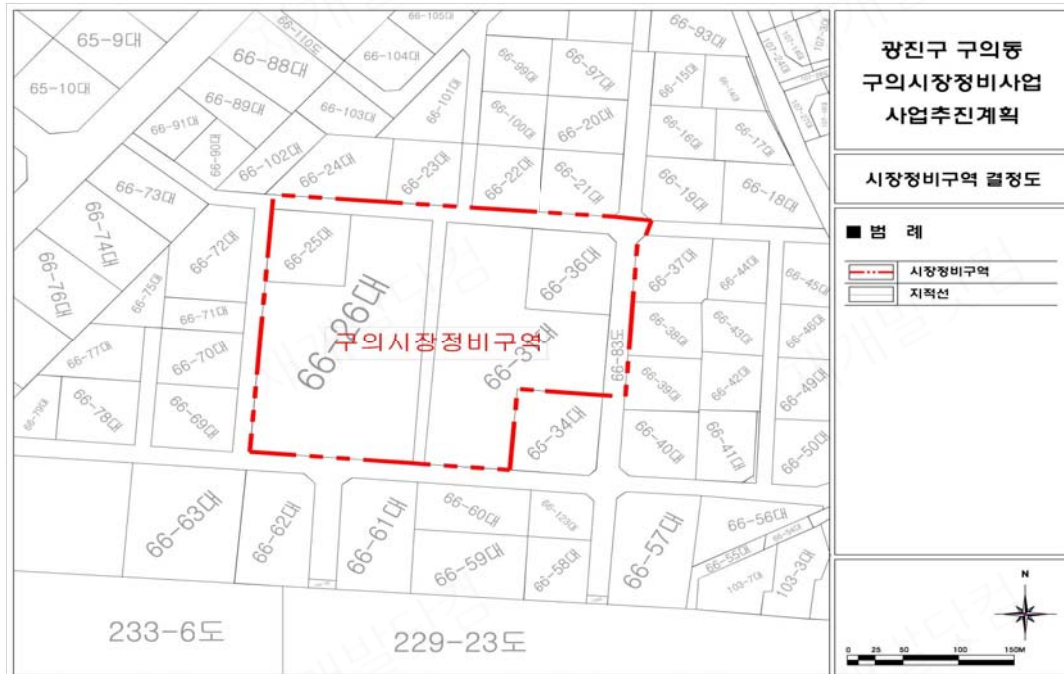
-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02-2133-4646)와 광진구 도시계획과(☎02-450-7695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- 따로 붙임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4. 기 타

-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■ 관계도면

[시장정비구역 결정도 : 신규]



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결정도 : 신규]

